

法部 <起案>의 자료적 성격과 특징

The Characteristics of Drafting Materials Produced in the Judicature

유 승 회(Yoo, Seung-Hee)*

◁ 목 차 ▷

1. 서 론	3.1 <기안>의 체제와 문서형식
2. 法部の 설립과 관제체제	3.2 <기안>의 자료유형과 내용
2.1 法務衙門의 설립	3.3 <기안> 소재 범죄유형과
2.2 法部로의 개편과 조직 변화	사건처리 과정
3. 法部 <起案>의 체제와 자료 유형	4. 결 론
	<참고문헌>

<초 록>

본고에서는 법부 관련 공문서 가운데 <기안>이라는 文書群에 대해 사료적 평가를 시도하였다. 법부 형사국에서 작성된 <기안>의 작성 시기는 1894년부터 1905년으로, 여기에는 고등재판소와 한성 및 지방재판소에 내려 보내는 법부의 공문 6,202건이 수록되었다. 내용면에서는 전국의 범죄 양상, 범죄인의 체포 및 신문, 죄인의 심리 및 조율, 판결, 형 집행 사항 등 형사재판의 전 과정이 미시적인 형태로 기록되어 범죄인의 성명, 죄명, 범죄 원인, 사건 현황, 죄인 압래 및 도주 상황, 감옥소의 운영 등 형사사법 처리과정의 구체적인 모습을 한 문서 안에서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법부 <기안>은 형사정책 뿐 아니라 범죄 양상의 추이를 파악하여 해당 시기 사회상을 파악하는데 기본 사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 형사사법의 집행 과정에서 생산된 문서들을 통해 국가의 사회통제 방법, 범죄인의 처우 및 교정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근대적 사법처리업무를 살펴볼 수 있는 일차 자료라고 할 수 있다.

要語: 법부, 형사국, 기안, 범죄, 공문서, 형사정책

* 서울시립대 HK교수(jiin0330@hanmail.net)

접수일: 2009년 9월 7일 최초심사일: 2009년 9월 10일 심사완료일: 2009년 9월 17일

<ABSTRACT>

This article attempts to historically evaluate the group of materials, so-called drafting from the criminal division among the official documents related with the Judicature(法部). The drafting written by the criminal division of the Judicature includes 6,202 official documents which were sent from the high court to the Hanseong and local courts. They contain in the microscopic pattern the whole process of the criminal trial including the arrest, questioning, and trial of criminals, the examination and mediation of criminals, and judgment and sentence execution as well as the aspects of crimes that occurred nationwide. With regard to the contents, the drafting from the Judicature is mainly about criminal cases. Therefore, the contents do not deal with lawsuit-related documents or the appeals or disputes of people but treat the statement of decision for the criminal under trial, Hyeongmyeongbu(刑名簿), the mediation and settlement of all criminals, and the release and treatment of imprisoned criminals.

As seen above, the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bundance of the reproduced drafting from the Judicature lets us understand the transition of criminal aspects as well as criminal policies that they can be utilized as foundational historical materials to figure out social aspects in that period. It can also be said that drafting has a bibliographical characteristic that it suggested crucial examples to be used for the national social control of the time and the treatment or correction of criminals through understanding the context of documents produced in the process of executing criminal cases.

key words: Judicature, Drafting, Hyeongmyeongbu, criminal, Hanseong, official documents, criminal policies

1. 서론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사회는 언제나 범죄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국가는 범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는 규제 장치를 마련해 왔으며, 그 규제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였다. 반면, 백성들은 국가의 규제에 대한 사회적 승인과 배제를 반복하며, 각 시대마다 많은 범죄를 일으키며 저항해 왔다. 그러므로 범죄는 그 이면에 계층 간 다양한 사회갈등을 함유하고 있어 이를 통해 해당 시기의 사회양상을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신구 사회가 점점을 이루고 있는 시기인 1894년~1905년의 法部 관련 자료에 주목하고자 한다. 1894년(고종 32) 5월을 끝으로 조선의 형사사법을 담당했던 형조는 근대식 체제를 갖춘 法務衙門으로 바뀌었으며, 이후 1895년에는 법부로 개칭되어 관제가 조정되었다. 이 시기 중앙관서에서 나오는 범죄관련 자료는 <起案>(규17702, 규17277)과 각종 <來去文>類에서 살펴볼 수 있다. <起案>은 법부 형사국과 검사국에서 작성되어 각도 재판소 및 중앙 각 부서와 주고받은 각종 공문서들이 수록되어 있는 자료이다. <來去文>類는 外部와 주고 받은 문서들이 주로 편록된 것으로, <法部來去文>(규17795, 규17884), <平理院來去文>(규17813), <漢城府來去案>(규17984) 등이 있다. <法部來去文>은 1895년부터 1906년까지 법부와 외부가 주고받은 문서들이며, <平理院來去文>은 평리원과 외부사이에 주고받은 문서들로, 외국인 범죄처리와 관련된 내용이 압도적이다. <漢城府來去案>은 1900년부터 1908년 한성부와 외부 사이에 오고 간 보고서, 조회, 훈령 등의 공문을 모은 것으로, 외국인 범죄 및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의 사건도 수록되어 있다.¹⁾

본 논문에서는 법부 관련 문서 가운데 훈령, 지령, 조회 및 조복류가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起案>의 자료적 성격과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1998년 서울대학교 규장각에서 간행된 『법부 기안』은 규17702, 규17277의 문서들을 영인한 것으로, 1895년부터 1906년까지 법부 형사국과 검사국에서 작성된 것이다.

1) 도면희, “규장각 소장 법부 관련 자료의 내용과 자료적 가치,” 『규장각』 26(2003).

규17702는 법부 형사국과 형사국의 후신인 사리국에서 작성한 기안이며, 규17277은 법무국 검사과(이후 검사국)에서 작성한 기안이다. 이 가운데 본고에서는 범죄발생과 관련한 범죄인의 형 집행, 범죄유형, 범죄인의 사면, 법부의 사건 처리과정 등의 기록이 나타나 있는 형사국 기안인 규17702의 자료적 특징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법부 <기안>에 관해서는 국가의 형사정책을 입안하고 결정, 실행했던 주체들이 직접 산출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연구에서는 많이 활용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한 연구는 규장각에서 법부 <기안>을 영인하는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해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²⁾ 따라서 <기안> 소재 문서들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본 <기안>의 자료적 고찰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범죄기록 뿐 아니라 전환기 형사정책을 살펴볼 수 있는 법부 <기안>의 자료적 가치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안>의 작성 주체인 법부의 성립 과정을 검토할 것이며, <기안>의 체제와 자료의 유형을 파악할 것이다. 아울러 자료 유형에 나타난 범죄기록의 다양성도 확인하여 법부 <기안>이 가지는 사료적 가치와 특징을 검토할 것이다.

2. 法部の 설립과 관제체제

2.1 法務衙門의 설립

1894년(고종 31) 6월 28일 軍國機務處는 의정부를 비롯하여 각 관청의 관제와 직무를 종래 조선 왕조의 규정과 각 국에서 통용되는 규례를 참작하여 개정하는 작업을 시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군국기무처는 형조를 폐지하고 사법, 행정 경찰, 赦宥에 관한 일을 관리하며, 고등법원 이하 각 지방 재판소도 감독하는 일원적인 사법기구인 法務衙門을 두었다.³⁾ 이때 설치된 법무아문과 형조의 관제체제를

2) 서울대규장각, 「法部起案」, 해설(1998).

비교해 보면 <표 1>과 같다.

<표 1> 1894년 법무아문과 형조의 비교

형조		법무아문	
4司	업무	4局	업무
官司	詳覆司 사형의 詳覆	총무국	법률 및 기밀사무 관리
	考律司 율령의 안핵	민사국	송사의 재판 및 법관의 시험 관리
	掌禁司 형옥과 금령 관장	형사국	시형죄수의 심리
	掌隸司 노비와 죄수를 관장	회계국	출납재정
官員	관서 1인(정2품)		대신 1인(종1품)
	참관 1인(종2품)		협판 1인(정2품)
	참의 1인(정3품)		참의 4인(3품)
	정랑 3인(정5품)		주사 20인(4품~)
	좌랑 3인(정6품)		

<전거> 「秋官志」 1, 官制 刑曹: 職掌 四司; 「한말근대법령자료집」 I (서울: 대한민국국회도서관, 1970), 「議案 各衙門官制」, 「議案 官秩」.

형조는 詳覆司, 考律司, 掌禁司, 掌隸司의 4司에 각각 2房을 두고, 별도로 刑房을 설치한 4司 9房 체계였다.⁴⁾ 이를 통해 사형의 詳覆, 율령의 按覈, 형옥과 금령, 노비와 죄수를 관장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형조의 체제는 사법 업무를 민사와 형사로 구분하고, 별도로 아문의 회계를 담당하는 회계국을 두는 등 총무국, 민사국, 형사국, 회계국의 4局 체제로 변화되었다.

관원의 구조 또한 형조의 관서 1인(정2품), 참관 1인(종2품), 참의 1인(정3품), 정랑 3인(정5품), 좌랑 3인(정6품) 등 9인의 체계가 大臣 1인, 協辦 1인, 參議 4인, 主事 20인으로 증가하였다.⁵⁾ 이 가운데 법무대신과 협판은 국왕이 직접 임명하는 勅任官이며, 참의와 주사 중 4품부터 6품까지는 법무대신이 선발하는 奏任官이고, 7품부터 9품까지는 判任官이었다.⁶⁾

3) 왕현중, “근대국가 체제의 권력구조와 지향,” 「한국 근대국가의 형성과 갑오개혁」 (서울: 역사비평사, 2003), 210-211.

4) 「秋官志」 1, 官制 刑曹; 「秋官志」 1, 職掌 四司.

5) 「한말근대법령자료집」 I (서울: 대한민국국회도서관, 1970), “議案 各衙門官制,” 6-7.

법무아문의 수장인 대신은 정2품인 형조 판서와 달리 종1품 관질로, 법률과 칙령에 서명하고 府와 衙門의 사무에 대하여 提議하며, 의정부 회의에 참가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하급 관청에서 제의하는 문제나 협판에게 직무를 임시 또는 일부를 대리시키는 등의 사무를 모두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다. 또한 법무대신은 각 局, 課와 소속 관청의 시무 세칙을 제정할 수 있었으며, 관하 관리들의 통솔, 감독권을 가지고 있었다. 소속 관임관의 수를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있었으며, 관리의 징계권과 포상권도 가지고 있었다. 협판은 형조 참판에 해당하는 관직으로, 각 局 및 課의 감독 뿐 아니라 아문 전체를 정리할 책임을 가졌다. 아울러 대신의 유고시 직무를 대리할 수 있었는데, 이 경우 협판은 공문이나 공적 문건에 서명할 수 있었다.⁷⁾

참의는 3품으로 각 국의 局長이 되었으며, 4품인 主事는 次長이 되었다. 법무 아문의 총무국, 민사국, 형사국, 회계국에는 국장인 참의가 각각 1인씩 있었으며, 주사의 경우는 민사국과 형사국이 사무의 번중함을 들어 각각 8인이, 총무국과 회계국은 2인이 배치되었다.⁸⁾ 국장은 대신의 명령을 받아 직권을 행사하였으며, 각 과의 사무를 관리하였다. 국 안의 각 과에는 과장 1명을 두었는데 주사로 임명하였으며, 이들은 국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를 분장하였다.⁹⁾

법무아문에 소속된 각 국의 사무를 살펴보면, 1894년 각국에서 통용되는 규례를 참작하여 협의 결정된 각 아문들에는 모두 공통적으로 총무국과 회계국이 설치되었다. 총무국에서는 각 부서의 법률 사무를 담당함은 물론, 해당 아문의 대신이 직접 개봉하는 문서, 기밀 사무, 관리의 승급 및 강직에 관한 문건을 보관

6) 「한말근대법령자료집」 I (서울: 대한민국국회도서관, 1970), “議案 官秩,” 59-60.
7) 「고종실록」 권32, 고종 31년 7월 14일(무자).
8) 「고종실록」 권31, 고종 31년 6월 28일(계유), 탁지부 대신이 部令으로 정한 관리의 녹봉지급에 관한 세칙에 따르면 법무대신은 칙임 1등관이며, 협판은 2, 3등관이며, 각 부의 1등 국장은 칙임 4등관, 주임 1등관에 해당되었다. 또한 각부의 2등 국장은 주임 2, 3등관, 각부 3등 국장은 주임 4, 5등관이었다(한말근대법령자료집 I (서울: 대한민국국회도서관, 1970), “勅令 第57號 官等俸給令,” 255-262).
9) 「한말근대법령자료집」 I (서울: 대한민국국회도서관, 1970), “議案 各府衙門通行規則 제 35조, 36조,” 53.

하였다. 회계국에서는 법무아문에서 출납하는 재정 문서를 맡아보며 고등법원 이하 각 재판소의 예산과 결산을 겸하여 관리하였으며, 각 해당 부, 아문의 회계 사무와 관하에 소속된 관청의 예·결산과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의 관리를 담당하였다.

법무아문의 주요 업무는 민사국과 형사국에서 담당하였다. 민사국에서는 백성들의 송사에 대한 재판, 법관과 律師에 대한 시험 등의 일을, 형사국에서는 사형에 처한 죄수를 심리하며 보석, 징역, 減刑, 권리 회복 등 의견을 제기하는 사무를 담당하였다. 민사국과 형사국의 경우 1894년 개혁 당시의 分課 사항은 알 수 없지만 다른 부서와 달리 민형사 소송을 주로 담당했기 때문에 일의 번중에 따라 다른 국보다 많은 8명의 주사를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었다.¹⁰⁾

이처럼 1894년 근대적 체제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국가의 관제 개혁 작업으로 4司를 두고 중앙과 지방의 사형죄 심리, 율령 상고, 형옥과 금령 관장, 노비 및 禁制 단속, 죄수 관리 등의 임무를 분장했던 형조는 법무아문으로 바뀌었다. 업무 또한 노비제가 폐지됨에 따라 종래 형조의 장예사가 담당했던 노비 단속의 사무는 사라지고, 민사국과 형사국이 사법, 행정 경찰, 재판소 등을 관장하여 사법권이 일원화되는 관청으로 변모되었다. 이 과정에서 조선시대 주요 직수아문 중 하나로 대역, 강상죄와 같은 국가 안위에 관한 죄를 주로 관장했던 의금부가 각 관청의 개정 작업에서 義禁司로 개칭되어 법무아문에 소속되었다. 의금사의 장관인 義禁司判事는 법무 대신이 겸임하였으며, 副官인 義禁司知事 혹은 同知는 협판이 겸임하였다. 또한 의금사에는 참의 1인과 주사 4인을 두었는데, 참의 1인은 법무아문의 총무국장이, 주사 4인은 법무아문의 주사 중에서 겸임하여 관리들이 범한 공적인 죄를 처리하도록 하였다.¹¹⁾

이와 같이 1894년 법무아문의 관제개혁에 있어 아문의 체제는 조선시기 형조와 달리 ‘衙門-局-課’의 행정체계와 ‘법무대신(장관)-협판(차관)-참의(국장)-주사(차장)’ 등 소속부서와 관할 관리의 상하 명령계통이 명확하게 제도화되어 있었

10) 「고종실록」 권31, 고종 31년 6월 28일(계유).

11) 「고종실록」 권32, 고종 32년 7월 12일(병술).

다. 업무에 있어서도 민형사의 구분이 없었던 형조와 달리, 민사와 형사가 구분되었고, 각 아문의 문서기록과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총무국과 회계국이 별도로 마련되어 사법업무와 행정업무가 분화되어 있었다.

2.2 法部로의 개편과 조직 변화

1894년 설치된 법무아문은 의정부를 내각으로, 의정부 하의 아문은 部로 개칭되는 관제 개편 작업을 통해 1895년 법부로 개정되었고, 이후 1899년 다시 局의 신설, 폐지를 거치면서 재차 조직 변화를 보였다. 이때 변화된 법무 관제의 내용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法部の 조직 변화와 分課 업무

1895년		분장업무(1895)	1899년	
부서	과		부서	과
대신관방	비서과	비밀에 관한 사항, 관리의 進退, 身分, 대신 官印 및 部印 관수	대신관방	비서과
	법무과	재판소 지방관 등의 질품에 응하는 지령, 훈령에 관한 사항, 사법관의 資格鑑定 및 考試, 법관양성소, 법학생도의 외국과견		문서과
	문서과	공문서류 및 成案文書의 授受 發送, 통계보고의 조사, 공문서류의 편찬 보존, 도서의 보관 및 간행		
민사국	제1과	민법 및 민사소송과 그 집행에 관계된 세칙 등의 起案, 민사에 관한 법률 명령, 그 재판 집행에 관한 사항	사리국	민사과
	제2과	재판소의 설립과 관할 구역, 행정재판에 관한 사항		
형사국	제1과	형법 및 형사소송과 그 집행에 적당한 세칙의 기안		형사과
	제2과	사형집행, 恩赦, 特赦, 復權, 假出獄, 유품계자의 범죄, 형사재판 비용 및 형사관련 공문 기안		
검사국		검사직제와 그 시행에 관한 사항, 사법경찰, 형사피고인의 처치에 관한 사항, 형사변호에 관한 사항	법무국	검사과 법제과
회계국		해당 부와 그 관하에 소속된 관청의 경비, 수입의 예산과 결산, 회계, 관할 관청소유의 재산과 건물 기타 일체 필요한 물품에 관한 장부 작성		회계국

<전거> 「한말근대법령자료집」 I, II (서울: 대한민국국회도서관, 1970).

1894년 법무아문 관제와 다른 점은 먼저, 법무 大臣官房을 신설하였다는 것이

다. 대신관방에서는 관제 통칙에 든 것 외에 사법관의 자격 선정 및 考試에 관한 사항과 외국 법률 유학생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였다. 分課도 마련되어 1895년 관제에서는 대신관방에 3과(비서과, 법무과, 문서과)를 두어 해당 사무를 분장하게 하였다. 비서과에서는 기밀사항, 관리의 進退, 身分에 관한 사항, 대신의 官印 및 部印의 관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였고, 법무과에서는 재판소 지방관 등의 질품에 응하는 지령, 훈령, 사법관의 資格銓定 및 考試, 법관양성소, 법학생도의 외국 파견에 관한 사항들을 맡았다. 문서과에서는 공문서류 및 成案文書의 授受와 發送에 관한 사항, 통계 보고의 조사에 관한 사항, 공문서류의 편찬 보존에 관한 사항, 도서의 보관 및 간행에 관한 사항이 분장되었다. 이러한 3과는 1899년에 이르면 법무과가 검사국에 편입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비서과, 문서과의 2과체제로 바뀌었다.¹²⁾

둘째, 법무아문의 총무국, 민사국, 형사국, 회계국의 체계는 1895년 법부 관제에서는 총무국이 폐지되는 대신, 검사국이 신설되었으며, 법관 양성소를 두어 법무대신이 직접 관할하게 하였다. 민사국과 형사국이 1등국이었고, 검사국은 2등국, 회계국은 3등국이였다.¹³⁾ 이러한 4국 체제는 1899년 조직변화를 보여 민사국과 형사국이 통합되어 사리국으로 변화하였으며, 법무국이 신설되었다. 법무국은 1895년 대신관방의 분과인 법무과와 검사국을 통합한 것으로 소속 분과로 검사과와 법제과를 두고 있다.

셋째, 각 국마다 分課 규정이 마련되었다. 1895년 개혁에서는 민사국과 형사국의 소속 분과로 각기 2과가 설치되었다. 민사국 제1과에서는 민법 및 민사소송에 관한 사항과 그와 관련된 집행 세칙의 起案, 민사에 관한 법률 명령, 재판 집행에 관한 사무가, 제2과에서는 재판소의 설립과 관할 구역, 행정재판에 관한 업무가 분장되었다. 형사국 또한 제1과에서는 형법 및 형사소송에 관한 사무와 그와 관련된 집행 세칙 등의 기안에 관한 사무를, 제2과에서는 사형집행, 恩赦, 特赦, 復權, 假出獄 등에 관한 사항과 유품계자의 범죄, 형사재판비용 등의 사무를 담당하였

12) 『한말근대법령자료집』Ⅱ(서울: 대한민국국회도서관, 1970), 501-502.

13) 고종실록 권33, 고종 32년 3월 25일(병신); 한말근대법령자료집』Ⅰ(서울: 대한민국국회도서관, 1970), “勅令 第內45號 法部官制,” 210-211.

다. 이와 같은 민사국과 형사국은 1899년 조직개편을 통해 사리국으로 통합되면서 사리국안의 분과인 민사과와 형사과로 개정되었다.

1895년 개혁 당시 분과가 없었던 검사국은 1899년 조직 개편을 통해 대신관방의 법무과와 통합되어 법무국으로 바뀌었으며, 법무국에는 법제과와 검사과 두 과가 소속되었다. 법무국 산하의 검사과는 민사, 형사 초심 안건에 대하여 각 재판소 질품에 응하는 공문과 검찰사무, 사법관의 자격 검정 및 고시, 형사피고인 처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였다. 법제과에서는 민법, 민사소송 및 형법, 형사소송과 그 집행에 적당한 세칙 제정, 법관 양성소, 법률 생도의 외국 파견, 단행 법류 제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¹⁴⁾

이처럼 법부는 여러 해에 걸쳐서 각 국과 소속 分課의 조직 개편이 진행되었다. 법부로의 관제개혁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은 각 국마다 산하 분과가 마련되어 일의 효율성을 극대화했다는 점이다. 특히 대신관방 산하로 문서과를 설치하여 공문서류 및 成案 문서의 접수 및 발송, 공문서류의 편찬 보존, 도서의 보관 및 간행을 담당하게 했다는 점은 법부 문서의 보관과 편찬에 기초를 마련하여 <기안>이 편찬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法部 <起案>의 체제와 자료 유형

3.1 <기안>의 체제와 문서형식

법부 <기안>은 1895년 4월에서 1899년 5월까지의 형사국 기안과 1899년 6월부터 1905년까지 사리국 형사과의 기안으로 구분된다. 형사국 기안은 총 42책으로 구성되었는데, 1책은 1895년 4월에서 8월 19일까지, 2책은 8월 27일에서 12월 까지, 3책은 1월~2월 8일, 4책은 2월 17일~3월까지로 법부에서 각 관서로 발송한 기안이 수록되어 있다. 5책부터는 4월, 6책은 5월, 7책은 6월 등 각 월별마다

14) 도면희, 앞의 논문(2003), 79.

1책씩 묶여져 있다. 이후 법부 형사국은 1899년 5월 사리국 형사과로 바뀌어 1899년 6월부터는 사리국 기안으로 나타나며, 이는 총 32책으로 구성되었다.

이와 같은 법부 <기안>에는 공문서 28종 총 6,202건이 수록되어 있다(표 3 참조). 종류로는 告示, 公移, 公覆, 關, 部令, 照會 및 照覆, 通牒, 指令 및 訓令, 單子, 上奏, 請議, 秘訓, 移牒, 題辭 등이 나타난다. 조선시대 공문서와 1895년 6월 새롭게 규정된 공문서의 종류 및 양식이 혼재하는 양상을 볼 수 있다.¹⁵⁾ 수록된 문서 가운데에는 상주(641건), 조회(232건)와 그 회답인 조복(129건), 훈령(2,717건), 지령(1,718건) 등이 약 88%를 차지하고 있다. 내각총리대신이나 황제에게 올리는 상주에는 유배처소나 죄인의 처교 집행 및 조율, 유배지 결정에 관한 사항들을 결제 받고 있으며, 각 도 재판소에 발송하는 지령에는 각종 범죄를 저지른 범죄인의 형량 조율 및 처결 안이 90% 이상을 이루고 있다.

가장 많은 문서군을 보인 훈령에는 징역 죄인의 사전 감등에 관한 사항, 형사재판시 형명부 표식 작성, 각 죄수의 조율 및 방송, 誦掟을 지시하는 내용들이 각 지방 재판소, 경무사, 평리원 등으로 발송되고 있다. 법부와 대등관인 경부(경무청), 고등재판소, 의정부 등에 발송된 통첩은 646건으로, 주로 판결 선고서 및 奏本의 관보게재를 요청하는 사항이 90%를 차지하며, 그 밖에 징역죄인의 기간 만료, 죄인의 법부 압송, 징역죄인 압송 시 여비지급 문제 등 형사업무의 세부 사항이 기재되었다.

15) 1895년 공문서의 양식은 종래 각 관청에서 일정한 사항을 백성에게 고지하는 민간 전령 및 揭榜이 고시로 바뀌었으며, 移文, 公移는 폐지되고 조회로 개칭되었다. 조회는 대등관 사이에 왕복하는 공문으로, 반드시 회답을 쓰는데 조복이라 칭하였다. 지령은 종래의 報狀, 題辭로 하급관의 질품서 및 청원서에 대한 上官의 지시에 해당하는 문서이다. 단 그에 대한 대답은 이전에는 청원서의 하단에 썼으나 반드시 당해 관청의 인쇄지를 사용하여 작성하였다. 통첩은 대등관에게 통지하는 공문이지만 회답을 필요로 하지 않는 문서이며, 훈령은 법률명령의 범위 안에서 장관이 관할하는 관리 및 그 감독에 속하는 관리에게 내리는 訓示 또는 명령이다. 종래에 사용했던 전령과 감결 등을 폐지하고 훈령으로 개칭한 것이다. 종래의 報狀, 由狀 등은 폐지되고 각각의 유형에 따라 보고서, 질품서, 청원서로 개칭되었다. 보고서는 하관이 장관에게 보고하는 것을 말하며, 질품서는 하관이 장관에게 질품하는 것을, 청원서는 管下官이 本屬 장관에게 청원하는 것을 이름으로 장관의 回覆를 요하지 않는 것이었다(권태억, “갑오개혁 이후 공문서 체계의 변화,” 규장각, 17(1994), 87-88.; 한말 근대법령자료집, I(서울: 대한민국국회도서관, 1970), “公文類別及式樣,” 474.).

이처럼 법부 형사국에서 작성된 <기안>에는 고등재판소 이하 한성 및 지방 재판소, 경무청, 내각, 탁지부, 궁내부, 군부 등 중앙 각 부서와 지방 재판소간의 주고받은 훈령, 지령, 상주문, 조회, 조복, 통첩들이 수록되어 있다. <기안>이 형사국이나 사리국 형사과에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법부 3국의 모든 사무 기록이 수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형사사건에 관련된 기록만이 수록되었다.

<표 3> 법부 <기안>에 나타난 공문서의 종류 및 내용

문서양식	발송처	건수	문서내용
고시		3	특별법원 설치 및 혁파건
공복	경무청, 고등 및 한성재판소, 궁내부, 탁지부	13	범죄인 이송건, 죄인방송건, 죄인관련 문서송교건
공이	상동	27	죄인발배 및 방송건, 범인압래 및 재판건
관	각도 관찰사	7	匪類 압상 및 처교건
단자		1	匪類 처교건
답조	탁지부	1	호남전총무관 조필영 처분시 관련 종인과 영리 등 임의처리건
부령	내각	1	한성부재판소 유치 관할 지역 지정권
비훈	충남, 황해재판소	2	죄수의 행적여부 재조사 또는 형착건
사신	경무청	1	유배죄인 호송 순검 청사 파송 요청건
상주	내각총리대신, 황제	641	유배처소 상주, 죄인 처교 집행 및 조율건, 유배지 결정건
윤첩		2	사전 방송자에 대한 의견서 송교건
이첩	고등, 한성재판소	2	사건 이첩건, 재수죄인 심판건
전보	인천항, 완도군, 영변관찰사	30	처교집행 중지, 제주선편 문의건, 철도 유배인 방송건, 각도 재판소 사형죄인 처교 집행건
전훈	각도 재판소	7	유배죄인 방송, 수속 방면건
제사	합천 유학	1	소장 내용에 관한 처리 방침건
조회	경무청, 내부, 고등 및 한성재판소	232	유배죄인 발송, 감옥서 이축 및 죄수 식비조치, 죄인조율
조복	각 재판소, 군부, 궁내부 등	132	유배죄인 발송 및 방송, 죄인조율, 순검 청사 파송 요청
지회	경무청	1	죄인 발배시 호송 순검 청사 파송 요청건
청원	법부	1	全南 金堤郡 羅道叔의 老父 老母 保放 請願件
청의	의정부, 내각	10	징역처단례 각의 정출건, 한성부, 한성재판소 합

法部 <起案>의 자료적 성격과 특징

			설건
지령	각도 재판소	1,718	각 죄수 조율 및 처결건
훈령	고등 및 각도 재판소, 경무청	2,717	징역죄인 사전 감등건, 형사재판 선고시 형명부표식 작성건, 소관 죄수죄인 처고 집행건, 각 죄수 조율 및 방송, 형착건
통보	의정부	2	주본 관보게재요청건
통첩	경무청, 경부, 고등재판소, 의정부, 회계국	646	판결선고서 및 주본 관보게재 요청건, 징역정 기간 만료건, 징역정 범부 압송건, 조율안 상주에 대한 특지 통첩건, 징역죄인 압송시 여비지급건
회전	부산항	2	부산항 監理 방송 報來건
기타	법부	2	살육 의견서
합계			6,202

이와 같이 갑오개혁 이후 각 부서에서 발송되는 문서와 법부에서 발송하는 문서들의 양은 방대하였다. 당시 법부의 문서 처리 상황을 경무청의 처무세칙을 통해서 유추해 보면, 경무청의 모든 문서는 관방 제1과에서 접수, 발송하였다. 접수한 문서는 중요한 조목을 記名簿에 등록하고 담당자가 檢印한 후에 과장에게 제출하였고, 과장은 이를 다시 문서 사항에 적합한 주관 局課에 배부하였다. 국과에 배부된 문서는 담당 주임이 受附 번호, 연월일, 件名 등을 受附簿에 기록한 후 係長에게 제출하면 계장이 이를 처리하였다. 각 대신의 훈령과 지령은 관방 제1과에서 謄本을 만들어 주무 국과에 진송하고, 正本은 해당 과에서 보존하도록 하였다.¹⁶⁾

경무청에서 수수, 발송한 문서들은 대신관방 제1과에 종류별로 警務令草案綴, 警務使訓令草案綴, 內部大臣稟申草案綴, 各部大臣稟申草案綴, 內部大臣訓令綴, 各部大臣訓令綴, 諸官衙 및 各部各局課往復綴, 기밀서류철 등을 마련하여 보관하였다. 警務使나 경무청 이름으로 발송하는 문서는 어느 국, 과에 속하는지를 막론하고 그 원안을 관방 제1과에서 편철하여 보존하였고, 각 局課長이나 각 局課 이름으로 발송한 문서의 원안은 각 국과에서 보관하였다. 照會書에 대한

16) 『한말근대법령자료집』 I (서울: 대한민국국회도서관, 1970), “警務廳訓令第1號 警務廳處務細則,” 429.

回答案과 訴願에 대한 指令案은 해당 조회서나 소원서에 첨부하여 편철하였다.

한편, 각처에 발송하는 문서는 대신관방 제1과에서 淨寫한 후 훈령번호부, 품신번호부, 제관아왕복번호부, 지령번호부에 문서의 주요 내용과 번호를 부서하고 原書와 淨書에 契印한 후 정서는 발송하고 원서는 보존하였다. 발송하는 문서에는 훈령 제○호, 지령 제○호의 번호를 기입하였다.¹⁷⁾

이러한 문서처리 규칙은 비단 경무청에만 한정되지는 않았다. 법부의 경우도 대신관방에 문서과가 별도로 설치되어 공문서 및 성안문서의 수수, 발송, 보존 등을 주 임무로 하고 있었다. 법부 <기안>의 문서들을 보면, 발송하는 문서의 종류에 따라 훈령 제○호, 지령 제○호 식의 문서번호가 기입되어 있으며, 문서의 중간에 원서와 淨書에 계인한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형사국 <기안>이 별도로 成冊된 것도 각 局課長이나 각 局課 이름으로 발송한 문서의 원안은 각 국과에서 편철하여 보관하는 원칙이 있었으므로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면 실제 법부 <기안>의 문서 형식은 어떠한지 살펴보자. 조선시대 공문서들이 한지에 작성된 것과는 달리 법부 <기안>의 공문서들은 ‘法部公用信紙’라는 해당 관청의 명칭이 인쇄된 공문 용지에 쓰여 규격화되었다. 법부 용지의 형태는 좌우, 세로 10행의 줄이 쳐져 있으며, 가운데에는 법부라는 부서명이 인쇄되었다. 이는 1894년(고종 31) 7월 9일 “경외에 내왕하는 文牒은 별도로 일정한 양식을 만들고 그 지면상에 해당 府, 衙, 州, 縣의 號記를 인쇄하여 통일과 비용의 절감을 기한다”¹⁸⁾고 한 議案에 따라 시행된 사항이었다. 따라서 법부용지에는 <그림 1>에서 굵게 표시된 것과 같이 기안일자와 시행일자, 대신, 협판, 해당 담당국 및 과, 국장, 과장, 고문관의 結印 부분이 인쇄되어 있고, 그 이외에는 해당 기안자가 국한문 혼용으로 해당 사항을 기술하였다.

17) 『한말근대법령자료집』 I (서울: 대한민국국회도서관, 1970), “警務廳訓令第6號 文書整理規則,” 498-500.

18) 『한말근대법령자료집』 I (서울: 대한민국국회도서관, 1970), “議案 京外往來文牒의 式樣에 관한 件,” 25.

- | | | |
|---|--------|--------------|
| 1) 開國 五百年 月 日 起案 | | |
| 2) 開國 五百年 月 日 施行 | | |
| 3) 大臣 | 協辦 印 | 刑事局 |
| | 刑事局長 印 | 第1課 主任 楊孝健 印 |
| | 第2課長 印 | |
| 4) | 顧問官 | |
| 5) 照覆高等裁判所件 三百二十四號 | | |
| 6) 逕啓者라左開案正書하시와檢案二卷送交爲希 | | |
| 7) 案 | | |
| 8) 全義郡尹養汝의 元犯朴甫卿之檢驗文案를刻即送交等因接準 ㅎ와 照覆檢案 二卷를送呈 ㅎ
오니 照亮查收 ㅎ시믈要홈 | | |
| 9) 開國 五百四年八月二日法部刑事局主事楊孝健 | | |
| 10) 高等裁判所主事金思鉉 座下 | | |

<그림 1> 「刑事局起案」 1冊, 開國504年 8月 2日 起案, 訓令 高等

사례로 제시한 <그림 1>은 법부 <기안>의 문서양식 가운데 조복의 한 예이다. 서술의 편이상 문서의 행 앞에 번호를 기재하였다. 1)과 2)는 기안을 쓴 날짜와 시행 날짜가 중국의 연호가 아닌 개국 연도로 기재되어 있다. 연월일의 기재 방식은 대한제국기에 들어오면 개국 연도가 아닌 조선의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여 이 시기 <기안>에는 ‘建陽’, ‘光武’의 연호가 기재되어 있다.

3)에는 법부대신, 협판, 형사국장의 결재란이 인쇄되어 있어 문서의 결재체제를 파악할 수 있다. 본 문서에는 문서를 작성한 형사국 제1과 주임 양호건의 인장이 찍혀져 있다. 이는 1895년 公文類別及式樣 8조에서 “훈령, 지령 등에 서압하는 예를 폐지하고 인장으로 대신할 것”¹⁹⁾을 규정하여 조선의 수결, 서압하는 서명제도 대신에 공식적인 관장을 사용할 것을 지시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고문관이 확인하여 결재하는 난이 있다(4항). 갑오개혁기 내각과 각 부 기타 관청에서 접수 발송하는 공문서류는 모두 각각 해당 고문관의 사열을 받아야만 했다. 즉 내각 각부 및 기타 각 관청에서 閣令, 部令, 廳令, 訓令 등을

19) 「한말근대법령자료집」 I (서울: 대한민국국회도서관, 1970), 「公文類別及式樣」, 474.

발하며 지령을 내릴 때는 그 辨理案을 협판에게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각각 해당 고문관의 사열을 받아야만 했는데,²⁰⁾ 위의 4)는 이를 말해주는 것이다.

한편, 각처에 발송하는 문서는 문서의 종류와 함께 번호를 기입하게 되어 있다. 즉 훈령 제○호, 지령 제○호의 번호를 기입한 후 깨끗이 복사하여 원문서는 형사국에 보관하고, 淨寫本을 발송하였다. 5)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유추할 수 있는데, 문서의 형식을 말해주는 조복, 문서 발송처인 고등재판소, 문서번호 三百二十四號가 기록되었다. 6)은 어떤 문서가 발송되는지 문서의 주요 내용이 공문서투와 함께 간략하게 서술되어 있다. “逕啓者라左開案正書하시와”라는 문서의 투는 1896년 이후부터는 “左開案을 등송함음이 何如함을지 裁決함심을 仰함”으로 바뀌면서 문서형식이 정형화되었다.

7)과 8)은 해당 관서의 요구사항을 기재한 것이다. 이 기안에서는 형사국 1과 주임 양효진이 고등재판소 주사 김사현에게 전의군 윤양여 사건의 검험문안을 보내니 자세히 조사할 것을 요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9)는 문서를 보내는 날짜와 송신자가, 10)은 문서의 수신자가 기재되어 있다.²¹⁾

위와 같은 법무 문서의 양식은 비단 조복 뿐 아니라 지령, 통첩, 훈령 등도 같은 형식을 보이고 있다. 지령의 경우는 8)의 형식이 “貴 質稟書를 接准함은즉 某事件에 대함야 如何如何 措處함기를 質稟함은바 該事件을 詳査함오니 如何如何 裁決함디 미 可함 고로 茲에 指令함”, 통첩의 경우는 “前日 相議함든 某事件은 如此如此 決定되어야기로 茲에 通牒함”이라고 하여 해당 공문서의 서식과 함께 기안의 주요 내용이 부가되고 있을 뿐이다.²²⁾

20) 「한말근대법령자료집」 I (서울: 대한민국국회도서관, 1970), “奏本 內閣, 各部, 各廳에서 接受, 發送하는 서류를 顧問官이 査閱케 하는 件,” “閣令, 部令, 廳令, 訓令을 顧問官의 査閱에 供하는 件,” 286.

21) 공문서의 경우 규정상 모든 장부의 기록에 잘못 썼거나 빠뜨린 글자가 있는 것은 일체 고쳐 쓰거나 지워버리지 못하게 하며 그 사유를 자세히 기록하고 담당자를 통하여 도장을 찍는 것이 원칙이었다(「고종실록」 권32, 고종 31년 7월 14일(무자)). 그러나 기안의 경우 한 관서 안에서 공문서를 작성하기 전에 초안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므로 해당 초안자가 자의적으로 수정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된다.

22) 「한말근대법령자료집」 I (서울: 대한민국국회도서관, 1970), 「公文類別及式樣」, 476-477.

이처럼 법부 <기안>은 자료의 방대함은 물론, 정형화된 문서형식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문서 안에는 발송 공문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직접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근대로의 이행 시기 국가 공문서의 변화양상도 검토할 수 있다. 아울러 문서 생산주체인 법부내의 조직 및 기능, 타 관서와의 관계 등을 살펴는 데도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3.2 <기안>의 자료 유형과 내용

그러면 근대적 사법체제를 지향하는 법부 <기안>의 문서군에는 어떠한 자료들이 수록되어 있는지 사례들을 통해 살펴보기로 하자. <기안>에는 다음과 같은 유형의 實例가 기록되어 있다.

① 형률개정 및 적용

형사국의 업무가 형법 및 형사 소송에 관한 사무, 그와 관련된 집행에 적당한 세칙 등을 기안했으므로 <기안>에는 형률 개정이나 적용에 따른 법부의 의견이 제시되어 있다. 이 시기 새로 제정된 형법은 <形律名例>와 <적도처단례> 등 단편적인 법령 밖에 없었기 때문에 거의 모든 범죄는 「대명률직해」와 「대전회통」에 준하여 법률을 적용하고 이를 새로 제정된 <형률명례> 상의 형벌로 환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²³⁾ 따라서 <기안>에는 「대전회통」과 개정된 <형률명례>의 적용으로 「대전회통」에는 법조항이 있으나 <형률명례>에는 없을 경우의 법률적용 문제,²⁴⁾ 「대전회통」과 「대명률」의 법조항이 相衝할 경우 법부의 조정 사항 등이 수록되었다.²⁵⁾ 또한 한성부재판소에서 백성들이 청송하는 경우 판결이 어려우므로 기한을 일부러 어기거나 명령을 거역하는 자는 <형률명례> 제27조와 28조를 적용하는 것이 어떠한지를 묻는 질품서에 대해 법부는 <형률명례>에

23) 도면희, “1894~1905년 형사재판제도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대학원, 1998), 154-155, 161.

24) 「司理局起案」 第8册, 光武4年 4月 5日 起案, 指令漢裁.

25) 「司理局起案」 第16册, 光武5年 8月 7日 起案, 指令漢裁.

따라 25조와 26조를 적용하라고 지령을 보내는 사례도 있다.²⁶⁾

그 밖에 범부령 제2호 및 제3호 민형소송 규정 중 개정건의 수록,²⁷⁾ 재판소 구성법에 따라 한성재판소를 한성부 중부 등친방 혜정교에 설치하며, 한성부 관할내의 민형사 송사는 한성재판소의 심리판결에 따른다는 한성재판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 지정 건²⁸⁾ 등 형률개정이나 재판소 구성에 관한 공문도 실려 있다.

② 유배 및 징역죄인 문제

1895년 4월 정부는 종래 徒刑과 流刑의 행형제도에 대한 개혁을 실시하여 유형 기간의 등급을 나누어 가감하는 규례와 징역처단 규례 등을 반포하였다. 이에 따라 조선시대 유형 3,000리는 종신 유형에, 유형 2,500리는 유형 15년에, 유형 2,000리는 유형 10년으로 개정되었고, 이후 도형과 유형은 징역형으로 바뀌어 처단되었다. 종신 유형은 종신 징역으로, 유형 15년, 10년은 각각 징역 15년, 10년으로, 도형 3년, 2년반, 2년은 징역 3년, 2년 6개월, 2년 등으로 바뀌어 처결하였다. 다만 국가사항에 관한 범죄에는 유형을 그대로 두고 도형은 징역으로 바뀌어 일은 시키지 않았다.²⁹⁾

이러한 정책에 따라 <기안>에는 유배죄인들을 도로 압취하여 <징역처단례>에 따라 징역형에 처하라는 범부 훈령들과 징역죄인의 처리문제에 대한 범부의 업무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유배죄인을 압송할 순검의 파송을 경무청에 요청하는 공문, 유배종신 죄인을 호송할 순검의 여비지급이나 징역죄인을 가둘 옥사를 수리하기 위한 公錢을 즉시 조획해 줄 것을 회계국에 요청하는 사항 등이 <기안>에 다수 기재되었다.

또한 징역죄인에 대한 방송 및 처리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공문들도 수록되어 있다. 赦典 조치에 따른 유배죄인의 형량감등, 각도 유배죄인 중 방송자와 감등자

26) 『刑事局起案』 第7冊, 建陽 元年 6月 20日 起案, 指令漢城府裁判所件.

27) 『刑事局起案』 第1冊, 開國504年 4月 2日 起案.

28) 『刑事局起案』 第1冊, 漢城裁判所位置管轄區域指定之件.

29) 이 시기 형사정책에 관한 연구로는 도면희, “갑오개혁기 형사법규의 개혁.” 『규장각』 21(1998); “갑오개혁 이후 근대적 법령 제정과정-형사법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27(2001)을 참조할 수 있다.

의 보고, 각 재판소의 기결수 및 미결수 가운데 석방자의 보고, 減等成冊 중 미결수 등재 사실과 징역기한 감등 기록, 징역죄인에게 속전을 받고 석방을 지시하는 공문, 미결수로 사전 방송되었다가 재차 나수된 자의 조율 등이 그 예이다.

특히 수감 죄인 가운데 질병에 걸리거나 病死한 자, 임신부의 처우 문제가 기재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감옥서에서 병사한 죄수의 경우 법부에서는 해당 시신을 검험한 후, 매장하라는 훈령이나 통첩이 수록되어 있다. 병중에 있는 죄인 일 경우는 병을 치료한 후 선고하거나 죄인의 病狀을 살펴 착실한 사람에게 책임 지고 치료를 지시하는 지령이나 통첩 등이 나타난다. 아울러 임신한 처교죄인은 분만 백일 후에 형을 집행할 것을 지시하고 있어 국가의 범죄인 처우가 어떠한지를 살펴볼 수 있다.

③ 범죄인의 조율 및 처변건

<기안>에는 징역형 이상에 해당하는 각종 범죄인들의 죄목과 형량을 관련 법규를 적용하여 확정하는 조율과정과 이들에 대한 처교사항이 다수 기재되어 있다. 즉 公錢의 횡령, 결호전 미납, 贓罪 등을 범한 유품 관직자들의 죄과에 대한 조율 및 처결건과 각 지역의 살인 및 강도, 절도, 방화, 아편 밀매 등 각종 범죄인에 대한 조율 및 처교건이다.

구체적인 실례를 제시하면 살육의 예로는 절도범 김홍봉을 동민들이 구타치사 하도록 내버려 둔 동민 김천보 등의 조율,³⁰⁾ 대낮에 사대부가에 들어가 부녀를 난자한 최정식에 대한 처변건 등이 있다.³¹⁾ 이 시기에는 부녀자의 간통이나 겁간 사례도 많았는데, 평강군 김순경과 간통한 박소사를 태형에 처할 건,³²⁾ 광주군 양반 김창영의 寡妹를 겁탈한 김만홍의 조율건,³³⁾ 여아 강간범인 송영수의 조율건,³⁴⁾ 연천군 과부 김씨를 보쌌해 간 한복연의 조율건³⁵⁾ 등이 그 예이다. 또한

30) 『刑事局起案』 第6冊, 建陽 元年 5月 15日 起案, 指令仁川裁判所.

31) 『刑事局起案』 第7冊, 建陽 元年 6月 17日 起案, 指令漢城裁判所.

32) 『刑事局起案』 第25冊, 光武 元年 12月 27日 起案, 訓令高等裁判所.

33) 『刑事局起案』 第31冊, 光武 2年 6月 6日 起案, 指令京畿裁判所.

34) 『司理局起案』 第3冊, 光武 3年 8月 9日 起案, 訓令咸南.

각 군에서 발생하는 掘冢, 偷葬죄인의 조율, 도박죄인 처벌, 12세 여아를 노비로 매매한 홍장수노미의 조율,³⁶⁾ 아편을 흡연한 이윤화 등의 처분건³⁷⁾ 등 각 지방 재판소 심리죄인의 조율 및 처고 사항이 관서 간 공문으로 발송되었다.

그 외에도 죄인의 나이와 범행일자의 보고, 진술이 미흡한 죄인의 재조사, 정범과 간범의 처분 여부, 경무청 초안과 재판소 초안을 모순되게 한 죄인의 신문 및 조율건 등 심리과정이나 형사처리과정에서의 보완 사항을 명하는 공문들이 기록되었다.

이 가운데 살육 죄인에 관한 문서의 내용을 조선시대와 비교해 살펴보면, 조선시대 형조의 계사 내에는 正犯과 干犯 등 범죄인의 供招, 檢驗관의 檢驗 내용과 의견서, 피해자 가족, 증인, 간련인의 진술이 서술되었다. 정범의 조사에는 사건 당시의 정황, 치사자와의 관계, 범행 목적, 범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이 기록되었으며, 간련인의 조사에는 정범인의 당시 행적, 범행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한 진술 내용이 적혀 있다. 또한 檢驗관의 檢驗 내용에는 致死人의 신장과 얼굴색, 신체의 손상 여부, 상처 부위, 상처의 크기 등이 기재되었고, 이에 대한 檢驗관의 범죄인 처리과정, 율문 적용문제, 죄목과 형량에 관한 의견 등이 수록되었다.³⁸⁾ 따라서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 범죄인의 거주지, 성명, 직역, 사건의 개요, 범행 장소, 범행 방법, 치사인과 시친의 관계,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법부 <기안>의 살육범죄 기록에서는 공문의 대부분이 각 지방 재판소에서 올라온 보고서나 질품서의 내용을 보고 해당 범죄인의 형량을 조율하는 과정이었으므로 檢驗의 내용이나 정범과 간범 및 사건 관련인의 진술서 등 세세한 내용은 기재되지 않았다. <기안>에는 살육이 발생한 지역, 피고인과 치사자의 성명, 치사원인 등의 내용이 요약되어 서술되어 있지만, 별지로 고등 재판소의 심리 기록이 첨부되는 사례도 있다.³⁹⁾

35) 『刑事局起案』 第38冊, 光武 3年 1月 26日 起案, 訓令忠南.

36) 『司理局起案』 第3冊, 光武 3年 8月 18日 起案, 指令漢裁.

37) 『刑事局起案』 第37冊, 光武 2年 12月 21日 起案, 指令漢裁.

38) 유승희, “『日省錄』 刑獄類에 나타난 死罪 기록의 고찰,” 『서지학연구』 제38집(2007).

④ 판결 선고서 및 奏本의 관보 게재 요청건

<기안>에는 사형에 처하는 죄인의 선고문 및 이를 관보에 게재할 것을 의정부나 내각에 요청하는 통첩이 기록되었다. 갑오개혁기 정부는 일반인에게 알릴 사항은 관보를 이용하게 하였다. 관보에 게재하는 사항은 조칙, 법률, 칙령, 각령, 부령, 각부 훈령, 고시, 경무청 및 한성부 공문, 예산 외 지출, 敍任 및 辭命, 관청사항, 사법, 雜事 공사관 및 영사관 보고, 외국의 중요 사항, 여러 관청의 광고 등의 제반사항이다.⁴⁰⁾

이러한 원칙에 따라 법부는 고등재판소 심리죄인의 판결 선고서, 각종 범죄인의 성명, 죄명과 처교일시, 유종신죄인의 성명 및 유배처, 죄인의 징계를 면하는 사항, 정배죄인의 방송 등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라고 의정부나 내각에 요청하였다.

⑤ 회계업무건

징역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각급 재판소에 감옥시설이 갖추어져야 하고 이에 따라 죄수의 식비, 피복비가 마련되어야 했다. 따라서 <기안>에는 징역죄수의 의복과 철쇄제구 제작, 각 지방 옥사수리비, 감옥서 소용 물건, 죄수의 식비 등 감옥 설비나 기타 시설들의 설치, 감옥서 운영의 제반 경비에 대한 회계사항을 집행하기 위해 법부는 각급 재판소, 회계국, 탁지부와 많은 공문을 왕래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태형, 징역죄인의 속전 처리에 대한 공문도 수록되었다.

⑥ 판결 선고서 및 刑名簿

법부 <기안>에는 각종 범죄인의 판결선고서가 수록되어 있다. 판결 선고서에는 피고의 성명과 나이, 직업, 거주지가 기재되었으며, 판결의 요지, 이유 등이 수록되었다. 판결의 요지에는 검사가 公訴에 의해 심리가 이루어졌음을 언급하며, 피고의 사건연류 과정, 피해자의 범행이유, 사건의 개요, 관련인들의 증언,

39) 『刑事局起案』 第38册, 光武 3年 1月 14日 起案.

40) 官報, 開國 504年 閏5月 25日.

판결 이유, 형량 등이 실려 있다.⁴¹⁾

- | |
|-------------------------|
| 1) 某府某郡某面坊 某契里 職業身分姓名年齡 |
| 2) 犯罪種類 |
| 3) 刑名及刑期 |
| 4) 宣告 年 月 日 |
| 5) 刑期滿限 |
| 6) 初犯 或 再犯 |
| 7) 執行經過年 月 日 |
| 8) 事故 |

<그림 2> 형명부 표식

또한 법부에서는 범죄의 종류 여하를 막론하고 각각 형명부를 만들어 성씨에 따라 분류하였다. 먼저 형명부에는 1)범죄인의 거주지, 직업, 신분, 성명, 연령을 상세히 기재하였으며, 家戶數와 범인의 호주 여부도 기록하였다. 2)에는 범죄의 종류를, 3)형명 및 형기란에는 선고한 형명 및 笞數, 벌금 액수, 징역 年數를 적었다. 4)에는 재판 선고한 연월일, 5)에는 죄수의 형기만료일, 6)에는 강도 재범, 詐欺取財 초범의 예로 범인의 전범 유무와 범죄종류를 상세히 기재하였다. 7)에는 징역형 이상의 죄수가 방면할 연월일을 기록하고, 태형에 처한 범죄인일 경우 모년모월모일 집행경과하고, 벌금형에 처한 자는 모년모월일에 완납함이라고 기재하였다. 8)사고란에는 범인의 도망, 사망, 特赦, 大赦 여부와 공범자 성명 등 범죄인 신상에 필요한 사정의 개요를 적었으며, 도망이나 사망, 사면일 경우는 그 연월일을 반드시 기재하였다.⁴²⁾ 이러한 판결 선고서와 형명부에 기재된 기록들은 범죄인의 신분, 지역, 연령 뿐 아니라 범죄의 발생 이유, 사건의 개요, 피고와 원고의 관계 등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유용한 자료이다.

41) 「刑事局起案」第7冊, 建陽 元年 6月 2日 起案, 通牒內閣記錄局; 「刑事局起案」第7冊, 建陽 元年 6月 30日 起案, 通牒內閣記錄局.

42) 「한말근대법령자료집」I (서울: 대한민국국회도서관, 1970), 法部令第10號 刑名簿表式, 606-608.

이상과 같이 법부 <기안>에는 형법 및 형사소송과 관련된 규정, 유품계자의 범죄 및 각종 범죄인들에 대한 사건의 내용과 처벌, 處絞죄인의 사형집행, 정배 및 징역죄인의 형 집행, 사면, 復權, 假出獄, 형사피고인의 처치 등에 관한 공문과 판결 선고서가 수록되어 있다. 다만 전근대 시기 형조의 기록과 상이점이 있다면 「추조결옥록」이나 「일성록」에서는 민사·형사의 내용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 반면, 법부는 형사국과 민사국으로 나뉘어 각 소속 업무를 분장하였으므로 법부 <기안>에는 형사사건의 내용이 주를 이룬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송 관련 문서나 민인들의 상언, 격쟁 등의 내용은 기재되지 않은 반면, 심리죄인의 판결선고서, 형명부, 죄인 압래 및 도주 상황, 법부 운영에 필요한 재정사항에 관한 협조 공문 등의 기록은 「추조결옥록」이나 「일성록」에서는 살펴볼 수 없는 자료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서들을 통해 당시의 형법규정, 범죄유형과 범죄인의 현황, 사건의 개요, 형사사건의 처리과정, 국가의 형사정책 등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었다.

3.3 「起案」 소재 범죄 유형과 사건처리과정

앞서 언급했듯이 형사국 <기안>에 수록된 문서는 총 6,202건으로, 이는 2,425건의 범죄 행위에 대한 사건 처리 공문이었다. 2,425건의 범죄를 시기별, 지역별로 제시하면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에서 보면 1895년부터 1905년까지 11년 동안 연 평균 225건 이상의 범죄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1898년이 431건으로 가장 많으며, 1899년 352건, 1905년 270건, 1901년 258건의 순이다.⁴³⁾ 지역별로는 한성부가 가장 많으며, 경기, 충남, 경북의 순으로 나타난다.

범죄유형으로는 모반, 난언 등 정치범죄를 비롯하여, 살인, 강도, 구타 및 상해, 강간 등 폭력범죄, 개인의 재산탈취나 재물거래를 악용하는 절도, 사기, 공갈, 횡령, 장물 등의 형태가 보인다. 또한 고의로 사람의 재물에 불을 놓는 행위인 방화, 남의 무덤을 불법적으로 파내는 굴충, 인신매매, 인삼잠매 등의 범죄형태도

43) 1895년의 범죄건수가 적은 이유는 형사국 <기안>이 1895년 4월부터 작성되어 다른 해보다 3개월 정도의 기록이 부재한 것이 한 원인이다.

나타났다. 그 가운데 사회의 혼란기를 틈탄 절도범 및 적도들의 횡행, 탈옥죄수의 발생에 따른 해당 관리의 처벌 사례가 조선시대에 비해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표 4> 전국의 시기별·지역별 범죄 건수

지역 시기	한성부	경기	황해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평안도		함경도		미상	합계
				충남	충북	경남	경북	전남	전북		평남	평북	함남	함북		
1895	12	3	1	3	3	3	2	2	1	2	0	0	0	0	0	32
1896	47	16	9	38	10	6	6	7	2	8	12	6	5	0	2	174
1897	49	7	5	23	14	10	10	6	8	9	6	14	6	1	6	174
1898	35	45	36	42	32	23	33	25	24	36	44	36	11	0	9	431
1899	42	40	33	41	22	24	48	17	13	20	23	13	9	1	6	352
1900	18	17	22	17	9	24	14	4	10	7	12	15	7	1	6	183
1901	41	30	9	14	14	25	22	9	23	12	15	18	11	3	12	258
1902	45	14	22	11	11	11	18	8	12	12	7	12	9	4	15	211
1903	20	11	7	19	8	11	20	7	16	7	11	9	7	1	8	162
1904	32	26	22	21	17	17	14	1	25	2	13	15	9	2	12	228
1905	31	37	24	32	13	18	23	12	18	18	15	17	5	0	7	270
합계	372	246	190	261	153	172	210	98	152	133	158	155	79	13	83	2,475

시대적 특징과 관련해서는 아편밀매나 흡연 등 아편 관련 범죄와 일인 및 청인 살해, 일인에게 인천항의 토지를 잠매하는 행위 등 외국인과 관련된 범죄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특히 정부가 수익만을 위해 백동화를 남발한 탓에 엄청난 양의 불법·불량 백동화가 유통되는 시기적 상황에 따라 1896년 이후 사주전 죄인들이 각 지역에서 다수 체포되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법부 <기안>에 나타난 동일 범죄인과 관련된 공문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표 5>는 <기안>에 실린 유배죄인 이세직의 형사처리 업무 기안들이다. 법부 <기안>에는 이세직 사건의 처리로 1898년 1월 7일 조율건에서부터 9월 2일 추자도로 이배하는 문제까지 고등재판소, 의정부, 인천부, 제주목, 경무청, 회계국 등 상하급 관서들과 8개월 간 총 19건의 공문을 주고받고 있다.

1895년 이후 개혁된 형사절차는 죄인이 체포되면 경무청에서는 재판소 검사에게 이를 보고한 후, 지시를 받아 1차 심문을 하고 재판소로 압송하였다. 그러면

검사가 다시 죄인을 신문한 후 起訴 여부를 결정하였고, 기소된 죄인은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未決監에 구류되었다. 피고에 대한 수사가 종결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고, 판사는 공소장에 의거하여 피고를 심리한 후 법률 적용과정에 들어가게 된다.⁴⁴⁾

고등 재판소 심리죄인인 이세직의 형사처리 과정을 보면, 그는 1897년(고종 34) 8월 29일 법부의 검사로 있으면서 韓善會 옥사에 연루된 도주범들을 잡는다는 핑계를 대고 公錢 2,000元을 횡령하였으며, 고종 앞에서 “警務使의 책임을 洪鍾宇에게 맡기지 않는다면 장차 을미년(1895)보다 더 심한 변고가 닥쳐올 것”이라는 난언을 한 죄를 받고 있다.⁴⁵⁾

<형률명례>에 따르면 각 재판소에서는 징역형 종신 이상에 해당하는 죄인은 반드시 법무대신의 지령을 받아 판결을 선고해야 했으며, 국사범을 유형에 처할 때에는 반드시 국왕에게 상주한 후 그 재가를 거쳐야 집행할 수 있었다. 이에 법무에서는 1898년 1월 7일 횡령과 난언의 죄목으로 이세직을 종신 유형에 처할 것을 왕에게 주청하였고,⁴⁶⁾ 다음날 8일 고종의 재가에 따라 유배지가 제주목으로 결정되었다. 이후 법무에서는 유종신죄인 이세직을 제주목으로 보내니 죄수가 도착한 후 인천부옥에 가두고 배에 탑승할 때 까지 단속할 것을 인천부에 지시하였고, 제주목에는 유배죄인을 엄히 단속할 것을 훈령하였다. 5일 뒤에는 서울에서 인천까지, 인천에서 제주까지 죄인을 호송할 관입관과 순검, 사령의 왕복 여비, 죄인의 편도 배삯, 일일 여비를 회계국에 신청하였다. 그런 후 의정부에 이세직의 판결 선고서 1통을 보내어 관보에 게재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44) 도면희, “1894~1905년 형사재판제도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대학원, 1998), 154-155, 161.

45) 「고종실록」 권36, 고종 34년 8월 29일.

46) 「고종실록」 권37, 고종 35년 정월 7일.

<표 5> 고등재판소 심리죄인 이세직의 사건처리과정

문서양식	발송처	연도	월일	문서내용
상주	황계	1898	1. 7	고등재판소 심리죄인 전중추원의관 이세직 조율案
상주	황계	1898	1. 8	태100流宗신죄인 이세직 제주목 제주군 정배 案
지령	고등	1898	1. 8	공화 2천원을 欺取乾沒하고 황계 앞에서 난언한 이세직 조율안
조회	회계국	1898	1.10	流宗신죄인 이세직을 發配하기 위한 호송관원의 여비지급안
훈령	인천부	1898	1.10	流宗신죄인 이세직을 엄히 단속하고 乘船해서 보낸 후 보고할 건
훈령	제주목	1898	1.10	流宗신죄인 이세직을 발배하니 엄히 단속할 것을 지시하는 안
통첩	의정부	1898	1.15	이세직 판결선고서 관보 게재 요청건
상주	황계	1898	1.24	유배죄인 이세직 건물공화 미추쇄건
통첩	경무청	1898	1.26	유배죄인 이세직을 미료사건으로 발배치 못하니 경무청 순검청사를 환송할 건
지령	고등	1898	2. 1	流宗신죄인 이세직을 船便을 기다려 즉시 발배할 것을 지시하는 안
통첩	고등	1898	2.24	이세직을 明日上午 六點에 발배하니 遲緩하는 폐가 없도록 지시건
조회	경무청	1898	2.24	流宗신죄인 이세직을 압송할 순검과 사령을 금일내로 起送할 건
조회	경무청	1898	3. 1	유배죄인 이세직 발배시 押去할 순검,사령 파송 요청안
조복	회계국	1898	3. 1	제주목 유배죄인 이세직 발배시 압거할 순검 여비금 요청안
조회	경무청	1898	3.25	제주군 流宗신죄인 이세직 압송할 순검 청사 금일내로 擇送할 안
훈령	인천	1898	4.18	죄인 이세직과 압거할 주사, 순검, 청사의 船便 발송건
훈령	전남	1898	8.31	제주군 流宗신죄인 이세직을 완도군 추자도로 이배하니 엄히 단속건
훈령	제주목	1898	8.31	流宗신죄인 이세직의 추자도 이배건
조복	의정부	1898	9. 2	제주군 유배죄인 이세직의 추자도 이배령 發訓건

<전거> 서울대규장각, 법부기안,3(1998).

하지만 이세직의 경우 횡령한 공전을 회수하지 못한 관계로 유배처소로의 출발이 늦어져 법부에서는 순검청사를 환송하라고 경무청에 통첩하였으며, 2월 1일 선편을 통해 조속히 제주도로 유배시키라는 지령을 고등재판소에 발송하고 있다. 이후 법부는 경무청에 이세직을 압송할 순검청사 파송건과 회계국에 여비금 요청 공문을 재차 보냈으며, 제주도로 유배된 이세직은 8월에 다시 완도군 추자도로 유배지가 옮겨져 이에 대한 공문처리가 이루어졌다.

<표 6>과 <표 7>의 사례는 昌陵의 陵上을 실화한 일을 보고하지 않은 전창릉령 김진현과 참봉 신경수, 印信을 偽造한 시위대참위 문희선에 대한 사건처리과정이다. 먼저 실화죄인 김진현 등에 대해 법부는 6월 27일 이들의 죄목을

法部 <起案>의 자료적 성격과 특징

적은 조율안을 내각총리대신에게 발송하며, 그 결과를 한성재판소에 공문으로 보내고 있다. 이후 한성 재판소에서 판결한 김진현 등의 판결선고서를 관보에 게재할 것을 요청하고, 유배지를 나주부 완도군 우금도로 결정한 사항을 내각총리대신과 한성재판소에 발송하였다.

<표 6> 失火罪人 김진현, 신경수의 사건처리과정

문서양식	발송처	연도	월일	문서내용
상주	내각총리대신	1896	6.27	昌陵 陵上 실화건으로 전창릉령 김진현, 전창릉참봉 신경수 조율
통첩	한성	1896	6.29	전창릉령 김진현 등 6인 조율건
통첩	내각기록국	1896	6.30	한성재판소에서 판결한 김진현 등 선고서 관보 게재 요청건
상주	내각총리대신	1896	7. 1	유2년죄인 김진현, 이진석, 차순서의 유배처소를 나주부 완도군 우금도로 정함
통첩	한성	1896	7. 3	유2년죄인 김진현 차순서 유배처소 擬定건

<전거> 서울대규장각, 「법부기안」1(1998).

<표 7> 偽造印信 죄인 문희선의 사건처리과정

문서양식	발송처	연도	월일	문서내용
상주	황제	1899	1.25	印信을 偽造한 시위대참위 문희선의 조율건
통첩	의정부	1899	1.28	문희선 판결선고서 관보 게재 요청건
상주	황제	1899	1.30	流15년 죄인 문희선을 황해도 황주군 鐵島로 정배하라는 건
훈령	고등	1899	1.30	피고 문희선을 流15년에 처할 것을 지시하는 훈령
훈령	황주군	1899	2. 1	죄인 문희선의 배소를 황주군으로 정하니 정배시 엄히 단속할 건
훈령	황해	1899	2. 1	죄인 문희선의 배소를 황주군으로 정하니 정배시 엄히 단속할 건
통첩	회계국	1899	2. 1	鐵島 流15년 죄인 문희선 發配시 여비 지급 건
훈령	황주군	1900	1.11	유배죄인 문희선을 敎典 放送한 후의 상황을 보고할 건
훈령	황해	1900	1.11	황해군 유배죄인 문희선 放送後 報來件

<전거> 서울대규장각, 「법부기안」4(1998).

인신을 위조한 문희선의 경우(<표 7>)는 위조자체가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였으므로 유15년의 형량에 처할 것을 황제에게 상주하였으며, 형량이 결정되자 문희선의 판결 선고서를 의정부에 통첩하여 관보에 게재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후 황해도 황주군 철도로 정배지가 정해져 법부에서는 황해와 황주군에게 유배죄인을 엄히 단속할 것을 훈령하였고, 회계국에 발배시 소용될 순검 청사들의 여비지급을 신청하는 통첩을 보냈다. 이후 1900년 문희선은 사면령이 내려져 석방되었고, 법부는 황주군과 황해군에게 훈령하여 문희선의 방송 처리를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세직과 문희선의 경우는 유배형을 집행한 이후의 처리과정까지 기록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세직은 제주목으로 유배된 뒤 유배지를 완도군 추자도로 이배하는 과정이 수록되었으며, 문희선은 사면령에 따른 석방이 있는 후 황주군과 황해도의 처리를 보고받고 있다. 살인, 강도 등의 경우 그 형량이 대부분 교형으로, 조율과정과 교형 집행, 관보게재 요청 등 사건 처리공문이 간략하고 명확한 것이 대부분인데 비해, 국가 사범이나 유배죄인의 경우는 유배지의 변경, 사면조치에 따른 방송 등의 추가 사항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았으므로, 판결 집행 이후의 부가 공문이 수록되고 있다.

이와 같이 「起案」의 문서자료는 시계열적 연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기별 범죄 양상의 추이와 더불어 전국의 범죄양상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한 사건에 대한 범죄인의 체포 및 신문에서부터 재판, 판결집행, 판결 선고서의 관보게재, 유배죄인에 대한 정배지역으로의 문서발송, 발배시 여비 지급건, 사전으로 방송된 죄인의 경우 방송 후 형지보고건 등 사건처리의 전 과정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다. 아울러 판결 선고가 난 이후 죄수의 도주, 석방, 형량감등 등의 사항까지도 기재되어 있어 당시의 형사사법 절차를 미시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4. 결 론

<기안>은 법부 형사국과 사리국의 주도 하에 편찬된 관문서로, 근대적 사법처리업무를 살펴볼 수 있는 일차 자료라고 할 수 있다. 1894년 근대적 체제로의 관계개혁 작업으로 법무아문은 사법, 행정 경찰, 재판소 등을 관장하여 사법권을 일원화하는 관청으로 변모되었다. 아문-국-과의 행정체계와 법무대신(장관)-협판(차관)-참의(국장)-주사(차장) 등의 계층체계로 기관이나 관리 등의 소관 업무나 상하의 명령 계통이 명확하게 제도화되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민사와 형사가 구분되고, 각 아문의 문서기록과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총무국과 회계국이 별도로 마련되어 행정업무와 사법업무가 분화된 특징을 가졌다.

또한 대신관방 산하로 문서과가 설치되어, 공문서류 및 성안 문서의 접수 및 발송, 보존, 도서의 간행을 담당했다는 점은 법무 문서의 보관과 편찬에 기초를 마련하였고, 이는 <기안>이 간행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

법부 형사국에서 작성된 <기안>에는 고등재판소, 한성 및 지방재판소로 발송하는 공문들이 6,202건이 기록되어 있어, 이를 통해 전국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양상 뿐 아니라 범죄인의 체포 및 신문, 죄인의 심리 및 조율, 판결, 형 집행 사항 등 형사재판의 전 과정이 미시적인 형태로 기록되어 있어 형사사법 처리과정의 구체적인 모습을 파악할 수 있었다.

내용면에서는 「일성록」이나 「추조결옥록」에는 민사·형사의 내용이 모두 기재되었으나 법부는 형사와 민사가 구분되어져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 살핀 형사국 <기안>에는 형사사건의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따라서 소송 관련 문서나 민인들의 상언, 격쟁 등의 내용은 기재되지 않은 반면, 각종 범죄인의 조율 및 처결, 심리죄인의 판결 선고서, 형명부, 징역죄인의 방송 및 처우문제, 죄인의 압래 및 도주 상황, 형집행에 필요한 재정사항 등이 기재되었다. 결과적으로 범죄인의 성명, 죄명, 범죄원인, 사건 현황, 죄인 압래 및 도주 상황, 감옥소의 운영 등을 한 문서 안에서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기안>에 실려 있는 문서들은 국가의 사회 통제적 측면에서 형사사법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제반 양상들을 비롯

하여 범죄 및 범죄자에 대한 가장 통합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안>에 기재되어 있는 기록들은 형법과 범죄에 내재되어 있는 사회 각 부분간의 관련성을 추적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법률체제와 처벌이라는 국가의 사회 통제적 측면에서 국가의 행정이나 범죄 대책에 대한 검토, 형벌의 기능, 법의 운용 등 해당 시기 형사정책 연구의 자료적 기반이 될 것이다. 둘째, 실제 범죄를 일으킨 개인에 대한 미시적 분석과 사회현상을 도출하는데 풍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특히 법부의 편찬 시기가 전통과 근대가 공존하는 접점의 시대였으므로 전환기 조선사회에서 범죄를 통해 드러나는 ‘백성의 순응과 일탈’, 이에 대한 ‘국가의 관용과 불관용’의 양상을 검토하여 해당 시기 표출되고 있는 사회 구성원간 갈등양상과 사회적 특성을 살필 수 있는 효율적인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본고에서는 법부 관련 공문서 가운데 형사국 <기안>이라는 문서군에 대한 자료적 평가를 시도하였다. <기안>의 분석을 통해서 이 시기 법부 관련 공문서 전반에 대한 평가를 도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轉載된 자료의 질적·양적인 풍부함으로 인해 법부 <기안>은 형사정책 뿐 아니라 범죄 양상의 추이를 파악하여 해당 시기 사회상을 파악하는데 기본 사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 형사사법의 집행 과정에서 생산된 문서의 맥락들을 이해하여 당시 국가의 사회통제 방법, 범죄인의 처우 및 교정 등 형사사법체도가 운영되고 있는 제반 양상에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를 제시했다는 점은 <기안>이 가지고 있는 자료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법부기안」 1~8. 서울: 서울대규장각, 1998.
- 「秋官志」. 서울: 법제처, 1974.
- 「한말근대법령자료집」. 서울: 대한민국국회도서관, 1970.

「고종실록」.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권태억. “갑오개혁 이후 공문서 체계의 변화.” 규장각」 17(1994).

도면희. “1894~1905년 형사재판제도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대학원, 1998.

도면희. “갑오개혁기 형사법규의 개혁.” 「규장각」 21(1998).

도면희. “규장각 소장 법부 관련 자료의 내용과 자료적 가치.” 규장각」 26(2003).

왕현중. 한국 근대국가의 형성과 갑오개혁」. 서울: 역사비평사, 2003.

유승희. “18~19세기 漢城府의 犯罪實態와 葛藤樣相.” 박사학위, 서울시립대대학원, 2007.

유승희, “「日省錄」 刑獄類에 나타난 死罪 기록의 고찰.” 「서지학연구」 제38집 (2007).

